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
PROSECUTION SERVICE

제주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김선문

전화 064-729-4422

보도자료

2022. 11. 23.(수)

제 목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불법선거운동 등 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·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☑ 사건관계인이 공적(公的) 인물인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,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,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(제12조 제1항 제2호)

- 제주지검 형사제2부(부장검사 오기찬)는 제주도선관위가 고발한 비영리 법인의 불법선거운동 사건을 수사하여, 위 법인 대표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캠프 및 컨설팅업체와 공모하여 후보자의 선거공약 추진 관련 홍보 행사를 지원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밝혀 오늘(11. 23.) 불구속 기소하였음
- 수사과정에서, 특정 선거캠프가 ①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하여 기업체들을 동원하고, 그 비용을 부담시킨 혐의, ②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표심을 왜곡한 혐의도 확인하여 함께 불구속 기소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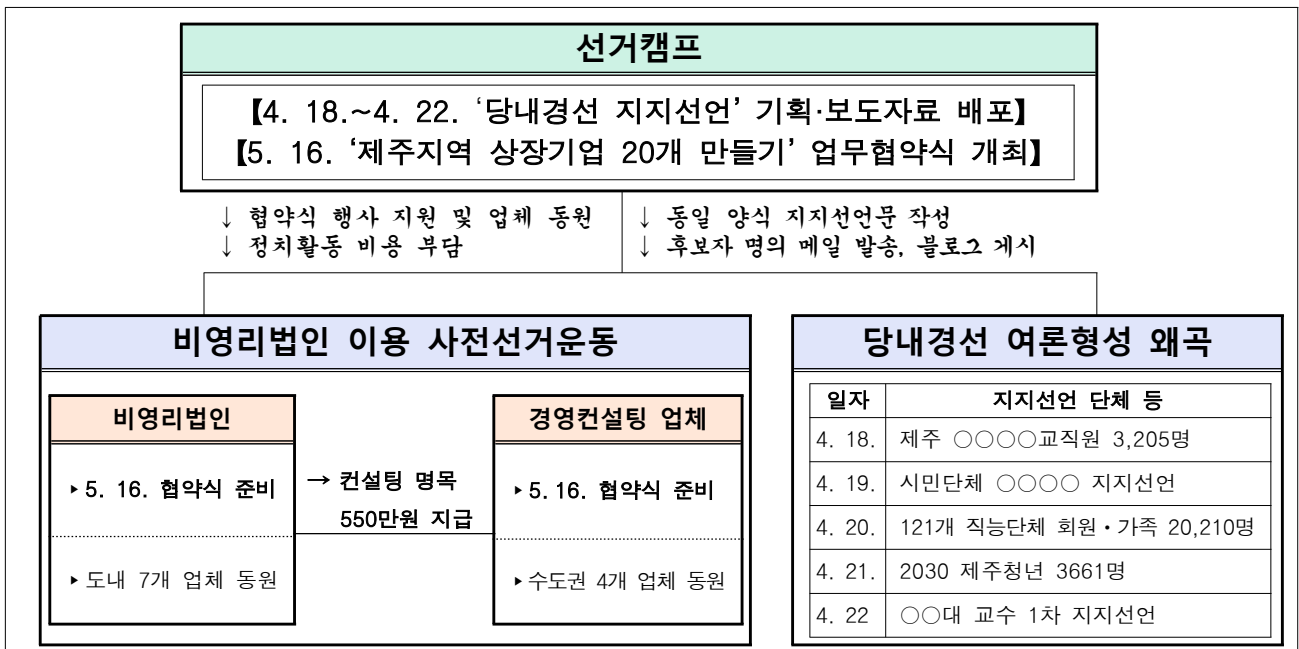
I 사건 개요

● 피고인 및 죄명

- A○○[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전 국회의원],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
- B○○[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장, 전 국회의원 보좌관], 공직선거법위반
- C○○[제주특별자치도지사 대외협력특보, 전 기자], 공직선거법위반
- D○○[사단법인 □□ 대표],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
- E○○[△△경영컨설팅업체 대표], 공직선거법위반

● **공소사실 요지**

- (피고인들 공모) 사단법인 □□ 대표의 직무상·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,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. 5. 16. A○○ 후보 선거사무소에서, 기업관계자·기자 등을 동원하여 ‘상장기업 20개 만들기’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[공직선거법위반]
- D○○는 2022. 6. 사단법인 □□ 자금으로 위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E○○에게 지급하여 A○○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, E○○는 선거운동 대가로 위 금원을 수수하고, A○○는 정치자금 수수 [공직선거법위반, 정치자금법위반]
- (A○○, B○○, C○○ 공모) 2022. 4.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·주도 [공직선거법위반]



II 수사 경과

- 2022. 5. 30. 제주도선관위 고발
- 2022. 6.~10. 검찰, 비영리법인 □□ 압수수색 집행 등
- 2022. 11. 23. 피고인들 불구속 기소

III

범행 개요

1 비영리법인 □□의 성격

- 서귀포시에서 굴피(굴껍질)의 체계적 생산 등으로 농촌공동체의 활력을 증진시키고, 감귤농가와 가공업계의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국비 등 74억원 상당을 지급받는 한시적 사단법인임
- 법인 소속 인건비 및 도내 업체들에 대한 지원금 등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며, '제주도 내 상장기업 유치' 공약과는 업무상 연관성이 없음

2 비영리법인 이용 사전선거운동

- A○○ 후보의 선거캠프는 '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'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으나,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 지역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음
- 이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하고, □□ 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도내와 수도권 업체들을 협약식에 동원하여 공약추진 실적으로 홍보하면서 관련 비용은 □□법인이 부담한 것임
- 위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들은 대부분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행사에 동원한 후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하였음

3 당내경선 여론형성 왜곡

- 당내경선에 대비하여, 선거캠프 내 '지지선언 관리팀'을 기획·운영하면서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하여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을 실시함
- 당내경선 직전인 2022. 4. 18.부터 4. 22.까지, ① 제주 ○○○○교직원 3,205명, ② 시민단체 ○○○○, ③ 121개 직능단체 회원·가족 20,210명, ④ 2030제주 청년 3,661명, ⑤ ○○대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하여 보도자료로 작성·배포한 것임
- 이는 법률에 정하여진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벗어난 행위로, 정상적인 여론형성을 왜곡하고,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것임

IV

수사의 의의

① 공정한 선거질서를 위반한 불법 엄단

-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A○○ 후보 선거캠프측과 비영리법인 □□의 대표 D○○간에 공모여부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청한 사안임
- 수사결과, 당내경선 승리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하여 기업체를 동원하고, 관련 비용을 법인에 전가하며,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방법으로 정상적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등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한 불법선거운동을 확인하였음

② 검사의 선거범죄 직접 수사

- 개정된 검찰청법(법률 제18861호)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기능을 폐지하였는바, 내년부터는 대통령령에 부패범죄로 규정된 일부 공직 선거법위반(금품수수, 공무원 선거개입), 정치자금법위반 등을 제외하고는 검사가 선거범죄를 직접 수사개시할 수 없음

- 다만, 2022. 12. 31.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어 있음(부칙 제3조)

- 본건은 위 부칙상 유예기간에 따라 검사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까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으나, 내년부터는 이 사건과 같은 선거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정치자금법위반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됨 ☑